

1993. 11.

光州直轄市西區地方土地評價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

審 查 報 告 書

總 務 委 員 會

光州直轄市西區地方土地評價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

審 查 報 告 書

1993年 11月

總 務 委 員 會

1. 審查經過

가. 提出日字 : 1993年 9月 24日

나. 提出者 : 光州直轄市 西區廳長

다. 回附日字 : 1993年 10月 4日 (總務委員會)

라. 上程日字 { 1993年 11月 2日 第27回(閉會中) 第1次 總務委員會
 第28回 光州直轄市西區議會(臨時會)

마. 開催回數 및 日數 : 1回 (93年 11月 2日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魏 勳 會計課長)

가. 提案理由

서구청의 직제개편에 따라 도시국 토지관리과의 지가조사업무가 총무국 세무과로 이관되어 직제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코자함

나. 主要骨子

- 부위원장을 도시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변경 (제2조)
- 간사와 서기를 직제에 맞게 변경 (제7조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專門委員 : 丁浩文)

본 조례개정안은 실.과.소의 직제 개편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

4. 質疑 및 答辯要旨

質 疑	答 辯
(質問者 : 李正朱 議員)	(答辯者 : 稅務課長 尹大宇)
○ 토지평가위원을 구의원 2명 정도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	○ 본업무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의원이 있으면 위촉할 수 있을 것임

5. 討論要旨 : 생략

6. 審査結果 :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

7. 少數意見要旨 : 없음

서구 조례 제 호

광주직할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광주직할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 조 제 2 항 중 “도시국장” 을 “총무국장” 으로 한다.

제 7 조 제 2 항 중 “토지관리과장” 을 “세무과장” 으로 하고, “지가조사계장” 을
“평가계장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3 년 10 월 1 일 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 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<u>도시국장</u>이 되며,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제7조 (간사와 서기) ① (생략)</p> <p>① 간사는 <u>토지관리과장</u>이 되고, 서기는 <u>지가조사계장</u>이 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조 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총무국장</u> ----- -----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 (간사와 서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세무과장</u> ----- ----- <u>평가계장</u>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